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1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새날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최호정, 홍국표 의원(4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6조는 ‘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 등이 명기되지 않고 보고 체계가 없어 구청장의 미해산(청산) 조합 관리가 미흡함.
- 이에 조합장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고,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합장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매 반기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제도화하여 미해산(청산) 조합의 효율적 관리 도모(안 제86조제2항)

나. 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 및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정기적 보고 체계 마련(안 제62조제3항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”을 “추진위원장, 조합장 또는 청산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
제8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
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.